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소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94

발의연월일: 2024. 9. 27.

발 의 자: 김소희·안철수·이성권

이달희 • 박성민 • 신동욱

우재준 • 임종득 • 김장겸

조경태 • 권영세 • 인요한

이인선 · 김성원 의원

(14위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UN 산하 정부간 기후변화국제협의체(IPCC)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.5℃를 초과하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안보 위협, 거주 및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 인류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.

이에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체결, 각국은 5년마다 상향된 자발적 감축기여 목표 제시 및 2050탄소중립을 향한 로드맵을 마련하 여 추진중임.

하지만,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, 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 특히,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분야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함.

미국, 중국, 일본, 유럽 등 선진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정책과 기후금융을 함께 추진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있 음. 우리나라도 철강, 조선, 석유화학, 자동차, 반도체 등 온실가스 다 배출 산업을 저탄소로 바꾸는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 점임.

이에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촉진을 위해 발행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고, 그 이후에는 종합소득에서 분리 과세하면서 세 율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5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2155호)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5(기후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) ①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(이하'기후채권'이라 한다)의 이자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6조 및 「법인세법」 제73조에도 불구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.

② 기후채권의 이자소득은 제1항의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「소득세법」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산입하지 아니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8조의5(기후채권의 이자소득
	에 대한 과세특례) ① 「기후
	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
	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
	<u>항에 따라 발행된 채권(이하</u>
	'기후채권'이라 한다)의 이자소
	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6조 및
	「법인세법」 제73조에도 불구
	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
	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.
	② 기후채권의 이자소득은 제1
	항의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
	「소득세법」 제14조에도 불구
	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
	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
	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.